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15
----------	------

2024년 9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12일 강석주 의원(찬성 31인)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9월 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강석주 의원)

1. 제안이유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그 예우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안 제5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 취지 및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발의되었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생략)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 지급액은 <u>월 15만원으로 한다.</u>	② ----- <u>월 15만원으로 하고,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으로 한다.</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제도의 운영 취지

-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해, 개인에게는 경제적·사회적 보상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구성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

가정체성을 확립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통합하고 국가를 유지·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음.¹⁾

-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서울시 보훈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들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음.

나. 서울시 보훈대상자 및 지원현황

- ‘24년 6월말 기준 서울시에는 총 109,675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시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현황

(2024. 6월말 기준 / 단위 : 명)

구분	총계	독립 유공자	참전 유공자	4·19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재일학도 의용군	고엽제 후유의증자	상이군경 (전상/공상)	공상 공무원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공 수훈자
총계	109,675	2,221	38,662	342	569	569	53	7,045	33,762	680	8,390	17,382
본인	66,355	1	38,662	156	471	387	1	7,045	16,581	324	0	2,727
유족	43,320	2,220	0	186	98	182	52	0	17,181	356	8,390	14,655

1) 송샘(2021). “보훈의 의미에 관한 국민인식 연구:공헌 유형별 보훈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20(4). 한국보훈학회.

- 서울시에서는 총 5개의 보훈수당을 운영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있음.

〈표〉 서울시 보훈대상자 수당지급 현황 ※ 중복지급 불가

구 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	생존 애국지사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공상군 경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손)자녀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 어려운자
인 원	1명	37,500명	3,300명	4,100명	4,000명
지원금액	월100만원	월15만원	월10만원	월20만원	월20만원
예 산	26백만원	67,500백만원	3,960백만원	9,840백만원	9,600백만원

다. 서울시 참전유공자 현황 및 지원현황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²⁾에서 규정하고 있는 6·25전쟁이나 월남전 참전자로서, 동법 제5조³⁾에 따라 국가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함.

- 현재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하여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전체 보훈대상자의 규모는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가 많은 참전유공자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5년 기준으로 2021년까지 전체 보훈대상자는 약 2%(약 18,457명) 감소한 반면, 참전유공자의 경우 약 29%(약 98,430명) 약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⁴⁾
- 2024년 6월 기준 서울시의 참전명예수당 실지급 대상자는 36,053명이며, 이 가운데 80세 이상 지급 대상자는 18,277명으로 나타남.
-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본 조례 제5조⁵⁾에 근거해 6·25전쟁 또는 월남자 참전유공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37,50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4) 최현수 외(2023). 「기초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방안 연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5)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타 시·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 신규등록자는 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서울지방보훈청장(남부·북부 보훈지청장 포함)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결정한다.

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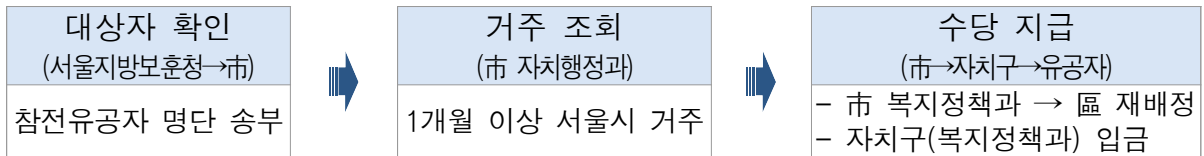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은 2010년 3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연혁

3만원('10.7월)→ 5만원('14.1월)→ 10만원('19.1월)→ 15만원('24.1월)

※ 2024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사업 주요 내용

- 근거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급대상 :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37,500명
 ※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 지급기준 : 매월 개인별 150천원 지급 ('24. 1월부터 인상)
- 지원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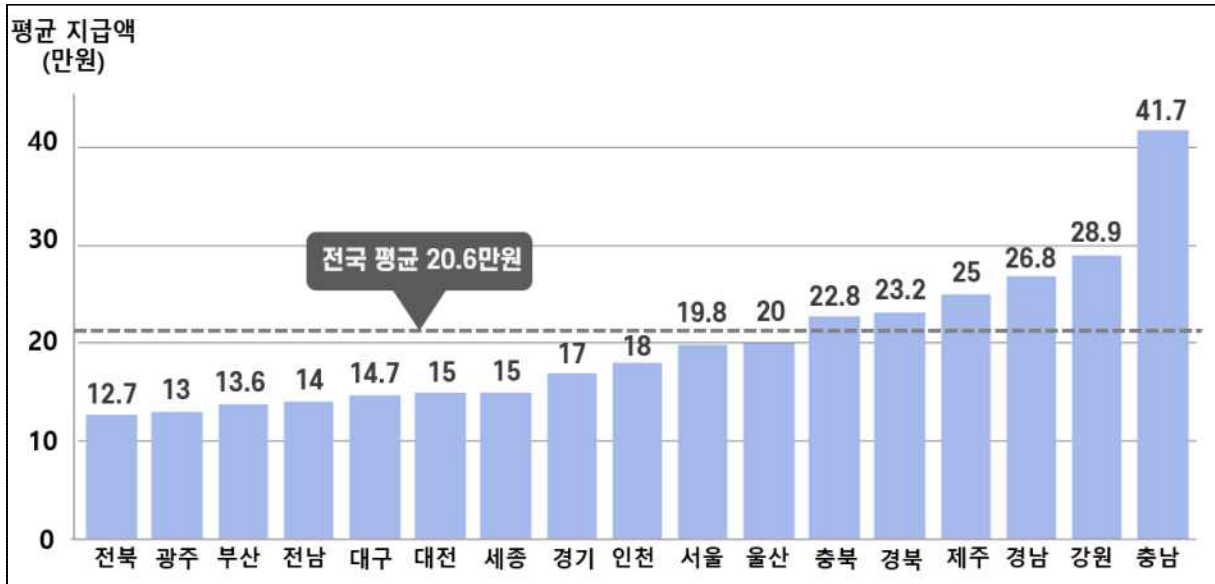


- 소요예산 : 67,500백만원

라. 참전명예수당 인상 검토

- 본 조례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중에서 8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 2024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수당의 평균 지급액은 20.6만원으로 나타남.⁶⁾

6) 국가보훈부 보도자료(2024.6.25.), “전국 지방자치단체 참전수당, 전년 대비 평균 12.5% 인상”



[그림] 17개 광역별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

-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80세 미만과 다르게 참전명예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80세 이상 참전명예수당 차등지급 지자체 현황⁷⁾

지자체	지원기준	지원금액
광주광역시	65세 이상의 광주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	· 80세 이상 : 월 13만원 · 80세 미만 : 월 10만원
울산광역시	65세 이상 6·25 또는 월남전 참전자	· 80세 이상 : 20만원 · 80세 미만 : 15만원
제주특별자치도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80세 이상 : 월 25만원 · 80세 미만 : 월 15만원

-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778억 5천만원으로, 24년 예산 대비 103억 5천만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7) 서울시 내부검토자료. 24년 1월 기준

〈표〉 참전명예수당 인상시 소요예산 추계

구 분	'25년 예산편성 인원	비용 추계
총 계	37,000명	77,850,000천원
65세 이상 80세 미만	18,250명	18,250명*12개월*150,000원 = 32,850,000천원
80세 이상	18,750명	18,750명*12개월*200,000원 = 45,000,000천원

라. 집행부서 의견 : 원안가결

- 집행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그 예우를 다하고자한다는 점에서 원안에 동의하며,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3 종합의견

- 「국가보훈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의미를 가짐.
- 또한 서울시의 타 보훈수당과는 중복지급이 안되는 점, 타 시도의 지급 수준을 고려할 때 그 인상액이 과하지 않은 점, 그리고 80세 이상으로 인상을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지속적인 예산 소요증가에 따른 예산확보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

는데 집행부서에서는 해당 조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참전수당의 인상
분 지급을 위한 2025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